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

[유형①] 아동·청소년 대상 창작물 제작활동 지원 지원신청서 작성 안내

* 아래 내용 및 공고문의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 작성양식

- 지원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한글파일(hwp)로 최대 A4 15매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만 작성바랍니다.
- 본문의 글꼴은 맑은고딕 11포인트로 작성, 줄간격은 160%로 작성
- 파란 안내글씨는 삭제하고, 검정색으로 작성하여 제출
- 사진 파일을 첨부할 경우 용량을 줄여 첨부(사진 파일 크기 조정 무료 프로그램 사용)
- 기본 양식을 준수하되, 추가 기술 사항이 있을 경우 양식 일부 변경 가능
- 예) 표로 되어있는 부분은 내용이 추가될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 유의사항

- 본 지원신청서는 심의자료로 활용되오니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충실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 지원심의 당시의 지원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수준으로 사업내용이 변경은 불가하며, 경우에 따라 향후 사업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본 사업의 지원신청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자	제출자료	제출방법						
필수	지원 신청자 전원	지원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혹은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양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첨부파일 면에 등록 - 파일형식 : 한글파일(hwp), 워드파일(docx) 중 택 1하여 제출 - 파일명 : 지원신청서_아동청소년 대상 창작물 제작활동 지원_단체 혹은 개인명 ※ 지원신청서 미제출, 양식 미준수 시 행정결격(심사대상 제외) 						
해당 자에 한함	문학 분야 트랙② 신청자	미발표 원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내 첨부파일 면에 신청인이 집필한 원고 등록 - 제출분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제출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시</td> <td>· 4편 제출, 작품 전체 내용 포함</td> </tr> <tr> <td>소설</td> <td>· 1편 제출(단편, 중단편, 장편) · 단편의 경우 작품 전체, 중단편 이상인 경우 작품 일부 제출(원고지 100매 이내)</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일형식 : 한글파일(hwp), 워드파일(docx) 중 택 1하여 제출 - 파일명 : 원고_아동청소년 대상 창작물 제작활동 지원_단체 혹은 개인명 ※ 파일형식은 한글 혹은 워드로 제한하나, 별도 파일 양식은 없음 ※ 제출 분량 미준수 시 행정결격(심사대상 제외) 	구분	제출내용	시	· 4편 제출, 작품 전체 내용 포함	소설	· 1편 제출(단편, 중단편, 장편) · 단편의 경우 작품 전체, 중단편 이상인 경우 작품 일부 제출(원고지 100매 이내)
	구분	제출내용							
	시	· 4편 제출, 작품 전체 내용 포함							
소설	· 1편 제출(단편, 중단편, 장편) · 단편의 경우 작품 전체, 중단편 이상인 경우 작품 일부 제출(원고지 100매 이내)								
시각분야 트랙 ①, ② 신청자	포트 폴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내 첨부파일 면에 신청인이 제작한 포트폴리오 등록 - 파일형식 : PDF - 파일명 : 포트폴리오_아동청소년 대상 창작물 제작활동 지원_단체 혹은 개인명 ※ 파일형식은 PDF로 제한하나, 별도 파일 양식 및 분량제한 없음 							
	추가자료 제출 희망자	포트 폴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내 첨부파일 면에 신청인이 제작한 포트폴리오 등록 - 파일형식 : PDF - 파일명 : 포트폴리오_아동청소년 대상 창작물 제작활동 지원_단체 혹은 개인명 ※ 파일형식은 PDF로 제한하나, 별도 파일 양식 및 분량제한 없음 						
	국내 거주 외국인	예술 활동 증명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개인)의 경우,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발급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내 첨부파일 면에 등록 - 파일형식 : PDF - 파일명 : 예술인활동증명_아동청소년 대상 창작물 제작활동 지원_단체 혹은 개인명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에 한함(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메모:9] arko 2021-05-06 16:39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매뉴얼 ★

① 검색창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검색

②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자료실 > 서식 및 매뉴얼

▶ https://www.ncas.or.kr/du?menuid=com.reference.puReference&target=Reference_Form_List#

□ **예산편성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지원신청액 작성안내**

-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창작물 제작활동 지원은 **자부담(자체부담경비) 의무편성 제외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정액지원 사업으로서, 실제 사업 운영 기간 내 소진 가능한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정액유형을 선택하여 주시고, 정액지원 금액을 NCAS와 지원신청서에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예산계획 작성 시 반드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신청개요의 예산(총 소요액과 지원신청액 모두)과 지원신청서의 예산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예시) 총 소요액 10,000,000원, 신청액 10,000,000원 입력
- 예술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조사업 수행 시 표준(서면)계약서 등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준거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 서면 체결 이행 의무)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제공 받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관리가 필요합니다.** (참고 : <http://artinsure.kawf.kr/>)
- 미투(Me Too)운동으로 대변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원사업 신청 시,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을 확인(체크) 후 세부 신청개요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준수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http://www.kawf.kr/social/sub12.do>)**을 통해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그 외 심층적인 성희롱·성폭력 워크샵(ex참여형 교육 등)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는 보조금 내 편성이 가능합니다.
- 창작활동 유지를 위한 영유아 자녀를 둔 예술인에게 보조금 내 돌봄 비용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돌봄비는 지원신청 시 사전 예산항목에 반영되어야 하며, 교부 신청 시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통해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80시간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1시간당 1만원 기준)
- 본 사업은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을 촉진하고자 장애인 친화형(배리어프리) 관련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내 장애인 친화형(배리어프리)를 계획하고 있는 신청자는 [붙임2] 장애인 친화형(배리어프리)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친화형 프로그램 양식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센터)을 참고했습니다)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 기초예술다양성증진사업 담당자
- 문의전화 : 061-900-2163 / 061-900-2167 - Email : diversity@arko.or.kr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 [유형①] 아동·청소년 대상 창작물 제작활동 지원

사업 개요	사업명	☞ 프로젝트명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		
	신청자(단체)명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등록된 신청주체명과 동일하게 기재		
	총 참여인원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총 인원 기재		
	지원유형	☞ 지원유형 트랙 ① / 트랙② 中 택 1	지원금액	☞ 선택한 지원유형 (트랙①/②)의 정액 지원금액 기재
	지원 장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일반 ☞ 본 사업의 장르는 문화일반입니다. 세부 장르는 아래에서 선택 바랍니다.		
	세부 장르	<input type="checkbox"/> 문학 <input type="checkbox"/> 시각 <input type="checkbox"/>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input type="checkbox"/> 복합(문학, 시각, 공연예술 중 2개 이상 장르가 복합된 사업 등) ☞ 하나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중복 표시 불가		
	사업기간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 ☞ 프로젝트의 사업 기간 기재		
	사업장소	도로명 주소 : ☞ 프로젝트의 사업 장소 기재		

[메모:8] arko 2021-05-03 14:14

[참고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모:6] arko 2021-05-03 13:35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지원신청 시, '문화일반'으로 신청하며, 세부장르의 4가지 장르 中 택 1 하여 신청

[메모:7] arko 2021-05-03 13:36

공연예술의 '쇼케이스(준 공연 형태)'는 트랙②로 지원

지원신청서 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하신 지원신청서는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및 관리, 타기관 중복지원 검토,
공공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1

공통 질문

○ 평가항목

[사업목적과 신청사업의 부합성 30%]

- 본 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Q1

지원신청자가 생각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창작 활동에 대한 특성을 기술하고, 그 특성이 지원신청자의 사업과 부합하는 이유를 기술하십시오.

2

세부추진계획

○ 평가항목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4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예산 편성항목과 단가 등이 제시한 사업계획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Q2

프로젝트 기획의도 및 내용

☞ 지원자의 프로젝트 기획의도 및 내용에 대해서 작성 바랍니다.

■ 주요 참여인력 현황 ☞ 지원자의 프로젝트 참여 인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작성 바랍니다.

인 번	성 명	역 할	현 직 / 주 요 경 력	확 정 여 부	비 고
1	홍길동	안무가	○ ○	확정 or 진행중	

Q3

향후 계획

☞ '아동청소년 대상 창작물 제작활동 지원 사업 수행'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작성 바랍니다.
(예 : 공연, 전시, 제작 기획 등)

Q4 예산집행계획

- ※ 지원내용 및 예산편성 가능항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참고2] 지원금예산편성가능항목)
- 본 사업은 자부담 적용 제외 사업이며, 예산편성 가능항목 외 편성 불가합니다.
 -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기획사 대행비, 출판사 대행비 등 기획용역업체의 대행비 편성 불가합니다.
 - 예산계획 작성 시 반드시 총소요액과 지원신청액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기재한 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 참여자 식비 및 회의진행비 편성 불가, 필요시 자부담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친화형(배리어프리) 프로그램 운영계획 시 [붙임 2]를 참고해주시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예산항목에 추가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 자녀 돌봄비용은 보조금 내 편성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80시간까지 신청가능. (1시간 1만원 기준)
 -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개인(단체)의 경우 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http://artinsure.kawf.kr/>)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전담팀 (02-2097-92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	트랙②	지원신청액	9,000,000
------	-----	-------	-----------

비목	세목	산출근거	지출예산
인건비	기타직보수	○기획인력 800,000원 x 1개월 x 2명	800,000
	일용임금	○단기인력 50,000원 x 3명	150,000
	합계		950,000
운영비	일반수용비	○대표자 사례비 500,000원 x 1명	500,000
		○작가 사례비 1,000,000원 x 2명	2,000,000
		○비평 사례비 400,000원 x 1명	400,000
		○자료집 재료비 300,000원 x 1식	300,000
		○자료집 제작비(디자인 등) 2,000,000원 x 1식	2,000,000
		○자료집 인쇄비 500,000원 x 1식(400부)	500,000
		○육아 돌봄비용 200,000원 x 1명	200,000
		○성희롱·성폭력 심층 교육 워크숍(아동청소년 이해를 위한 성교육) 400,000원 x 1식	400,000
		○회계감사수수료	
	임차료	○스튜디오 대관료 500,000원 x 1개월	500,000
		○조명 임차비 200,000원 x 1식	2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고용보험료(사업자 부담금)	
		○우편요금 300,000원 x 1식	300,000
합계			7,300,000
여비	국내여비	○현장답사여비 20,000원 x 5회 x 5명	500,000
		○숙박비 50,000원 x 5명 x 1회	250,000
	합계		750,000
총계			9,000,000

[메모:5] arko 2021-04-27 14:52
[참고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모:4] arko 2021-04-27 14:52
[참고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모:2] arko 2021-04-12 20:47
본 예산집행계획은 예시(안)입니다.
본 사업은 공정단가를 준수합니다. 예산집행계획은 [참고2] 지원금 예산편성 가능항목 외 편성 불가합니다.

[메모:1] arko 2021-04-12 20:39
* 대표자는 사업 내 역할을 고려하여 일반수용비 내에서 사례비편성 가능

[메모:12] ok 2021-05-07 23:05
* 영유아 자녀를 둔 예술인의 창작활동 유지를 위해 돌봄 비용을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참여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시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모:13] ok 2021-05-07 23:05
* 본 사업은 예술인권리보호를 촉진하고자, 성희롱·성폭력 교육의 심화과정 및 워크숍 등을 보조금 내 편성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메모:14] ok 2021-05-07 23:05
*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하단 내 회계감사수수료금액 확인

[메모:15] ok 2021-05-07 23:23
* 예산집행계획 설정 시 사업에 참여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고용보험20.12.10시행)
*단체(개인)마다 상이함, 편성 시 작성 바람

3 최근(2018~2020) 관련 활동

- 평가항목
- [사업수행 역량 30%]
- 신청자의 기존 활동내용을 보았을 때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기대할 수 있는가?

Q5 최근 3년간(2018~2020) 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활동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 지원자가 실제 활동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관련 프로젝트 내용 및 활동을 작성해주시고, 관련 이미지 자료를 표 안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2018~2020) 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활동 링크(URL)

☞ 링크의 하이퍼링크 작동 여부를 확인하시고 기재바랍니다.

■ 최근 3년간(2018~2020) 활동내역

사업명	사업 기간 및 내용	지원 금액(원)	비고
	· 수행기간 : · 수행실적 : (정량적으로 기술)	☞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업의 경우 공란으로 제출	

[메모:16] arko 2021-05-10 11:00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활동의 핵심내용 작성

□ [참고 1] 아동·청소년 대상 창작물 제작활동 지원 지원유형 및 규모(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유형 선택 신청)

지원유형	정액 지원액	비고
[트랙①] 창작 준비형	300만원	트랙①의 경우 2가지 금액 (300만원, 600만원) 중 택 1하여 신청 가능
	600만원	
[트랙②] 제작 준비형	900만원	트랙②의 경우 3가지 금액(9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중 택 1하여 신청 가능
	1,500만원	
	2,000만원	

□ [참고 2] 지원금 예산편성 가능항목

비목	세목	항목	비고
인건비	기타직보수	·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
	일용임금	· 사업보조 단기인력 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 사례비(사업참여 예술가, 비평가, 테크니션 등) · 재료비, 제작비, 설치비, 홍보비, 출판인쇄비, 운송비, 회계검사 수수료 등	· 사례비 지급 시 서면계약서 의무 · 대표자 사례비 편성 가능 (기획자 등 구체적인 수행역할이 있을 시)
	임차료	· 장비, 물품 임차비, 사업장소 대관료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보험료 등	-
여비	국내여비	· 국내출장 교통비·숙박비(실비증빙 가능 항목)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국외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교통비·숙박비(실비증빙 가능 항목)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참고 3]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원천세 · 고용보험 · 영유아돌봄비)

원천세	구분	원천징수	비고
	프리랜서 참여자 (배우, 연주자, 스태프 등)	사업소득(3.3%) (지급금액 x 3.3%)	독립적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 용역 제공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8.8%) (지급금액 x 8.8%)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 용역 제공
	12,500원 이하 기타소득 사례비	0원	금액에 대한 신고 납부
고용 보험	적용 대상		보험료 계산
	일반예술인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월 보수액* x 보험료율(1.6%) ※ 1.6% 중 0.8%는 사업주 부담금, 0.8%는 예술인 부담금 *월평균소득(월단위 계약 시) :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기간 *월평균소득(월단위 계약 x) : (계약금액 ÷ 계약일수) x 30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상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			
영유아 돌봄비	적용대상	지원범위	비고
	창작활동 유지를 위해 영유아 자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를 둔 참여예술인	1시간당 1만 원 기준 1인당 최대 80시간까지 신청 가능	자문사례비 등 일회성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제외
	※ 영유아자녀 돌봄비 1인에게 월 23만 원 이상 돌봄비를 지급할 경우, 사례비성이 아니기 때문에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필요 ※ 사업정산 시 관련 필요서류 필수 제출		

[메모:10] arko 2021-05-06 16:57

트랙①
 ○ (지원배경) 창작의 초기 단계를 지원하여 발표/공개 가능성 발견 및 탐색의 기회 제공
 ○ (대상사업)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 조사/연구 혹은 심층적 개발 활동 전반

[메모:11] arko 2021-05-06 16:59

트랙②
 ○ (지원배경) 아이디어 구현 단계에서 완성도 높은 신작으로의 발전을 위한 제작 단계 지원
 ○ (대상사업) 첫 발표/공개(발간, 전시, 공연 등) 지원
 ○ (필수이행사항) 연내 발표/공개 활동 1회 이상 추진

[메모:3] arko 2021-04-12 21:15

※ 원천세, 고용보험, 돌봄비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한 세무서 또는 회계 검증기관에 문의

붙임1

본 사업에서 기존 대비 달라진 내용 및 적용되는 제도

□ 기존 대비 달라진 내용

제도	기존	변경 및 강화
성희롱·성폭력 범죄 행위자(관련자) 지원신청 금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지원 신청하는 프로젝트(보조사업) 참여자 전원 해당) ○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지원신청하는 프로젝트(보조사업) 참여자 전원 해당)
대표자 사례비 책정 가능	○ 보조금 내 대표자 사례비 책정 불가	○ 대표자 사업 내 역할 고려하여 보조금 내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본인 사례비(대표자) 책정 가능 (2019년부터 적용)
성희롱·성폭력 예방제도 강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권익보호 교육 무료 교육 수강 안내	○ 심층심화적 성희롱·성폭력 교육 및 워크숍 보조금 내 추가편성 가능 (시범도입)

□ 21년 신규 적용 제도

[1]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의무화(해당 시)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의무
- 단체(개인)은 참여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부담금 보조금 내 편성

[2] 장애인 친화형(배리어프리) 프로그램 편성 가능

- 장애인 참여 증진을 위한 배리어프리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활동 촉진 지원 ※ [붙임 2] 참고
- 장애인 친화형(배리어프리) 운영계획 신청자는 장애인 친화형 프로그램을 위한 소요 비용 추가 편성 가능

[3] 영유아 자녀 돌봄비 편성 가능

- 창작활동 유지를 위해 영유아 자녀를 둔 예술인 돌봄비용 보조금 편성 가능(1인당 최대 80시간까지 신청가능(1시간당 1만원))
- 영유아 자녀 돌봄비는 지원신청 시 사전 항목에 반영되어야 하며, 교부 신청 시 반영하고자 할 때 변경신청서를 통해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영유아 :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4] 상해보험 가입 편성 가능

-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단체(개인) 상해보험비 보조금 내 편성 가능

[5] 국내 거주 외국인 지원 신청 확대

- 21년도 정시공모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 지원 신청 가능 (*지원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발급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제출단계에 첨부 시 지원신청 가능

□ 배리어프리 운영 계획

※ 출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센터) 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내 발췌

☞ 해당사항 있을 경우에만 ■ 표시로 작성하고,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을 예산항목에 추가 편성

작품 접근성 공연물, 전시물 등 예술작품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향유 가능한 정도		시설 접근성 주차장, 출입구, 좌석 등 공연장/전시장 시설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정도	
<input type="checkbox"/>	터치투어 ¹	<input type="checkbox"/>	휠체어석
<input type="checkbox"/>	자막(문자) 지원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동반 객석
<input type="checkbox"/>	수어 지원	<input type="checkbox"/>	이동 슬로프
<input type="checkbox"/>	쉽게 읽히는 안내서 ²	<input type="checkbox"/>	안내원 배치
<input type="checkbox"/>	릴렉스 퍼포먼스 ³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동 편의시설
<input type="checkbox"/>	음성해설 지원 ⁴	<input type="checkbox"/>	전동 휠체어 충전
<input type="checkbox"/>	점자 안내서	기타 관람 보조장치 (진동스피커, 음성 해설 리시버, 스마트 캡션 안경 등 해당사항 기재)	
<input type="checkbox"/>	큰 글자 안내서		
<input type="checkbox"/>	보이스아이 안내서		

1) 터치투어(Touch Tour)

- 시각장애인이 전시물을 손으로 만지면서 감상하는 프로그램 또는 공연 전 무대세트와 무대모형을 만져보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안내 프로그램
→ 예산편성 예시 : 안내원 사례비 등

2) 쉽게 읽는 안내서

- 이야기와 등장인물 등이 직관적인 안내와 그림으로 묘사되어 쉽게 읽히는 안내서 또는 시놉시스 제공
→ 예산편성 예시 : 안내서 제작비 등

3) 릴렉스 퍼포먼스(Relaxed Performance)

- 조금은 편안한 관람 분위기를 추구하는 공연 및 전시.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관객의 불가피한 입·퇴장을 제한하지 않고 특정 장애를 가진 관객의 신체의 일부가 떨리거나 작은 소리가 나게 되는 경우에도 함께 관람할 수 있음을 모든 관람객이 염두에 두고 관람하는 행사
→ 협의사항 예시 : 공연장 또는 행사장소와 사전 협의 및 관람객 대상 사전 공지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공연 전 안내사항의 녹음이 필요할 수 있음

4) 음성해설 지원(Audio Description)

- 시각적인 요소를 묘사하는 음성해설 서비스 또는 출연자 또는 강연자가 자신의 외향 또는 강연 장소의 생김새 등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
→ 예산편성 예시 : 무선송수신기 대여, 부스 대여, 해설자 사례비 등

5) 보이스아이

- 인쇄물의 정보 접근을 위해 음성 변환을 통한 텍스트 정보 음성 제공
→ 예산편성 예시 : 프로그램 대여, 인쇄비 등

1 사업 수행에 관한 서약서(필수)

※ 신청자는 본 사업의 신청 접수 시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같습니다. 단, 서류 제출 시 아래 서약서에 제출 날짜(일) 및 인적사항(단체(개인), 대표자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수행에 관한 서약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창작물 제작활동」사업에 신청한 개인(단체)는 이 사업 내용(트랙별 지원, 퍼실리테이터 그룹의 모더레이팅 및 행정 지원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였습니다.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참여(성과 공유회, 모니터링 등)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저작권, 계약 등 기타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 및 지원 신청서 상 내용에 대한 허위기재로 인한 민원 등의 문제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5월 일

단체/개인명:

대표자 성명: (직인생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성희롱·성폭력범죄 혐의에 관한 서약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창작물 제작활동」신청자 개인(단체)는 본 사업이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 및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지원신청하는 프로젝트(보조사업) 참여자 전원 해당)는 사업 참여 불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서약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자(단체)는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지원신청하는 프로젝트(보조사업) 참여자 전원 해당)하며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1년 5월 일

단체/개인명:

대표자 성명: (직인생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